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09 발의연월일: 2024. 7. 24.

발 의 자:정춘생·이해민·김준형

박은정 • 김재원 • 김선민

조 국・강경숙・황운하

신장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.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아울러 현행법 중 '수치심'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'불쾌 감'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, '수치심'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'불쾌갂'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(안 제21조제4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수치심을"을 "불쾌감을"로 한다.

제13조 중 "수치심이나"를 "불쾌감이나"로 한다.

제14조의2제1항 중 "수치심을"을 "불쾌감을"로 한다.

제14조의3제1항 중 "수치심을"을 "불쾌감을"로 한다.

제21조제4항제2호 중 "제9조제1항의"를 "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, 제9조제1항의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소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
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	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									
행위)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	행위)									
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										
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										
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										
여 성적 <u>수치심이나</u> 혐오감을	<u>불쾌감이나</u>									
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										
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										
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										
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										
벌금에 처한다.										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	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									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	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									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										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	①									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<u>수치</u>	① <u>불</u> 쾌									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<u>수치</u>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	① <u>불</u> 쾌									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	① <u>불</u> 쾌									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	① <u>불</u> 쾌									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	① <u>불</u> 쾌									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① <u>불</u> 쾌 <u>불</u> 쾌 <u>감을</u>									

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"영상물등"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"편집등"이라 한다)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# ② ~ ④ (생 략)

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 ①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 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## ②·③ (생 략)

- 제21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① ~ ③ (생 략)
  -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형사소송법」 제249 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「군사

불쾌감을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
협박·강요) ①
<u>불쾌감을</u>
<u>.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<b>4</b>

법원법」 제291조부터 제295조 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(생 략)
- 2. <u>제9조제1항의</u> 죄
- 3. 4. (생략)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—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<u>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</u> <u>죄, 제9조제1항의---</u>
- 3. 4. (현행과 같음)